

2번 질문 : 선거 및 정부 행정

답변 제출자 명단—찬성 입장

Matthew Goldstein, CRC 의장

John H. Banks, CRC 부의장

Mark Axinn,, 뉴욕 자유주의당 의장

Eddie Bautista, 뉴욕시 환경정의연맹 이사

Mark Davies,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이사

Tyrrell L. Eiland, New Voice Political Action 위원회 의장, 2009년도 시장 선거 후보

Stephen J. Fiala, 시 현장 개정위원회 위원장, 리치몬드 카운티 서기 겸 배심장

Daniel R. Garodnick, 5 선거구 시 의회 의원

Wayne Hawley,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부이사

뉴욕시 여성유권자 연맹

Carl E. Person, 2010년도 뉴욕시 검찰총장 선거 자유주의당 후보

Gene Russianoff, 뉴욕 공공정책연구그룹 수석 변호사,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 회장, 전임 공원·레크리에이션 국 국장

Scott M. Stringer, 맨하탄 보로장

답변 제출자 명단—반대 입장

Alvin M. Berk

James Brennan, 뉴욕주 하원의원 (브루클린)

Gale A. Brewer, 6 선거구 시 의회 의원

Dan Jacoby, GrassrootsNYC 이사

2번 질문 :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찬성 입장

Matthew Goldstein, CRC 의장

2010년도 뉴욕시 현장개정위원회는 시 현장에 대한 공개적이며 비당파적인 검토 과정 끝에 정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포괄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뉴욕주민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2회 임기 한도 제한법에 대해 다시 한 번 표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첫 번째 질문은 2010년 선거나 그 이후에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2회 임기 한도를 적용하고 시 의회가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 한도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이 법안은 현재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1993년 임기 한도 주민투표 결과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2번 질문은 통해 유권자들은 선거자금 지출내용의 완전 공개, 공천기회의 확대, 이해 상충 규정의 강화 등 중요한 측면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청렴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유권자들이 정부가 책임감 있고 공개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있을 때만 정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 현장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주민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John H. Banks, CRC 부의장

이 두 질문을 통해 뉴욕시 유권자들은 시 정부 구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1번 질문은 임기 한도 문제에 대해 표결할 기회를 뉴욕시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준다. 2번 질문은 뉴욕시 정부의 구조와 운영방식 및 뉴욕시에서 선거를 치르는 절차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데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다.

본인은 이들 주민투표 질문이 지향하는 목적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뉴욕시 유권자들에게 이 두 질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다.

Mark Axinn, 뉴욕 자유주의당 의장

무소속 후보들이 뉴욕시 예비선거와 총선에 쉽게 출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려는 위원회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특히 공천서명자 수를 개정해 무소속 후보들이 정당 공천 후보들과 동등하게 처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우리는 정당 공천을 받은 잘 알려진 후보들뿐만 아니라 무소속 독립 후보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시 의회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에게

450명의 서명을 받도록 그 조건을 낮춘 것은 시 전체에 걸쳐 무소속 후보들의 수를 크게 늘릴 것이다.

뉴욕 주 의회가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무소속 후보들이 공천지지 청원서 서명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 1) 공천지지 청원서 서명 운동 기간을 연장한다.
- 2) 무소속 후보들의 공천 청원서 서명 운동 기간을 년 초로 앞당긴다. 즉, 정당에 소속된 후보의 청원서 서명기간이 시작하는 시기나 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소속 후보들은 정당 소속 후보들과의 서명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날씨가 좋은 시기에 서명운동을 한다는 장점도 있다!

정당이 후원하는 이름난 후보들만큼 충분한 지원이나 자금은 없지만, 정당 후보들보다 유권자들의 뜻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ddie Bautista, 뉴욕시 환경정의연맹 이사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뉴욕시 내 저소득 유색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몇몇 지역에 유해시설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선셋파크, 사우스브롱스, 윌리엄스버그-그린포인트와 같은 지역에는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쓰레기 집하처리장, 버스종점 등 각종 공해소음을 내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었고 따라서 이곳들에는 어린이 천식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989년 뉴욕시 주민들은 시 현장에 “공평 배분율” 조항을 추가했다. 이 공평 배분율 원칙에 따라 시 정부 기구들은 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연례 시설 필요사항 표시 지도를 발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평 배분율 원칙은 공평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 지도에는 현재 시가 운영하는 시설들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미치는 환경적 여파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 정부,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공해시설도 우리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 시설지도 표시 문항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뉴욕시 주민들은 우리 시의 일부 지역들이 얼마나 공해에 시달렸는가를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또한 이런 환경상의 부당행위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Mark Davies,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이사

윤리교육 및 훈련(섹션 2603). 미 전역에 걸쳐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수많은 시 정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뉴욕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공무원 대부분은 윤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뉴욕시의 윤리감독기관인 이해상충위원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해왔던 것이다. 이번 현장 개정안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30 만에 달하는 시 공무원들에게 온라인 및 자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침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 훈련받은 교육전문가들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시 정부 기관에서 시행될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의 윤리교육 기록을 보관하게 할 것이다.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는 여러분께 2번 문항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Tyrrell L. Eiland, New Voice Political Action 위원회 의장, 2009년도 시장 선거 후보

공천 지지 청원서 서명은 공직에 출마하는 모든 출마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많은 경우 유망한 출마 후보들은 법에서 정해진 공천 서명자 수를 채울 수 있을만한 자금력이 없어서 번번이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현행법이 명시하는 서명자 수를 채우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보좌관과 자원봉사자들을 거느리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려면 필요한 공천 청원서 서명자 수를 줄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나 선거자금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투명하게 선거 운동을 해야 하며 모든 금전거래를 유권자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체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은 한 마디로 정부의 실패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재 관행은 불공평한 선거결과를 가져오고 그 어떤 제도와 규제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은 채 풍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후보가 그렇지 못한 후보를 누르는 상황을 낳고 있다.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후보와 그 후원자들이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선 선거자금 지출내용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반드시 이해 상충 훈련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선거재정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들이 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되면 이런 규정과 지침에 따르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사항이 된다. 이 의무적 훈련과정은 일체 실수의 여지를 없애 법을 어기고 본인의 공직을 남용해 부당하게 금전취득을 하는 자들이 가차없는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법 규정을 통해서 뉴욕시는 위법자들에게 전보다 높은 벌금을 물리고 다른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며, 시 정부의 손실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Stephen J. Fiala, 시 현장 개정위원회 위원장, 리치몬드 카운티 서기 겸 배심장

뉴욕시 의회 의원으로,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개정위원회 의장으로서 역임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뉴욕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2010년도 시 현장 개정위원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시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하에 설립되었다. 주민투표 2번 질문에 나와 있는 이 개정안은 바로 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주민투표 2번 문항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여기에 포함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천 청원서 서명과정을 개선하고 유권자 지원 및 선거재정위원회 기능을 향상시킨다.
- 뉴욕시 이해상충법을 강화한다.
-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뉴욕시의 행정중재재판소와 데이터 보고 시스템을 개혁한다. 이들의 기능은 지난 20년 사이의 IT 기술과 최상 관행의 발전에도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운영상태에 머물러 있다.

2번 문항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시 현장을 21세기에 걸맞게 개정하고 시 정부를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주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Daniel R. Garodnick, 5 선거구 시 의회 의원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지출된 선거자금의 출처를 낱알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CFB)는 후보들에게 포괄적인 자금지출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한편 외부단체들에 대해서는 아직 독립지출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여기서 독립지출이란 TV와 신문 광고비뿐만 아니라 선거와 직결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나 주민투표 문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전화설문조사나 우편물 캠페인 같은 홍보 활동도 포함한다.)

2010년 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례는 기업이나 다른 외부 단체의 독립지출을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지출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개인들보다 기업 및 외부 단체들이 훨씬 더 높은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날 수 있다고 하겠다. 선거에서 누가 어떤 후보를 후원 또는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지, 누가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선거 및 정부 행정 관련 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Wayne Hawley,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부이사

비윤리적 행위 관련 벌금(섹션 2606). 뉴욕시 윤리관련법 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액은 1989년 이래로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번에 최고 벌금액을 인상하면 21년에 걸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뉴욕시의 윤리감독기관인 이해상충위원회에서 윤리관련법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데 전보다 큰 운신의 폭을 줄

것이다. 이미 시카고, 호놀룰루, 잭슨빌,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같은 도시들은 윤리법을 개정하여 법 위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금전을 정부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먹은 돈 토해내기” 법은 부당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의 액수가 벌금 최고한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중요한 부정부패 저지 수단이 될 수 있다. 헌장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는 2번 문항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뉴욕시 여성유권자 연맹

뉴욕시 여성유권자 연맹은 선거 및 정부 행정 관련 문항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 헌장 개정위원회가 각기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는 일곱 가지 제안을 별도로 내놓았어야 한다고 믿지만, 이 중 대부분의 사안이 시 정부의 책임성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들 사안을 입법 과정을 통해 쉽게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후보와는 별개의 조직이나 개인이 지출하는 선거자금 내용을 공개하면 뉴욕시 선거재정 프로그램의 중요한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상충법을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높이면 부정행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공천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권자지원위원회(VAC)를 선거재정위원회로 편입시키면 더 많은 유권자와 후보들이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행정중재재판소를 통합하고 중복적이고 낡아빠진 데이터 보고 요건을 폐지하면 정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민간 대중교통 및 쓰레기수거처리 시설을 뉴욕시 시설물 지도에 표시하면 특정 지역사회에 공해시설이 과도하게 입주하는 불공평한 일을 없애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Carl E. Person, 2010년도 뉴욕시 검찰총장 선거 자유주의당 후보

선거자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여기에는 조직이나 개인, 그리고 이들이 대표하는 이해단체의 이메일 주소도 포함해야 한다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가 이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공천지지자 서명자 수를 줄여 공천과정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오래전부터 필요한 개혁이었다. 이 공천지지자 서명 요건은 공천을 받기 원하는 개인 후보나 정당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자유주의당 후보들을 주 정부 선거에 공천시키는데 (시간당 임금을 \$10으로 가정할 때) 무려 \$60,000에 상당하는 비용과 자원봉사자 시간이 소요됐다. 선거운동이 시작하기도 전에 들어가는 이런 지출 때문에 공천을 받은 개인이나 정당은 많은 경우

민주당 또는 공화당 후보들(이들은 공천을 받을 때 그런 지지자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된다.

Gene Russianoff, 뉴욕 공공정책연구그룹 수석 변호사

뉴욕 공공정책연구그룹(NYPIRG)은 주민투표 2번 질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다. 이 질문은 뉴욕시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시 헌장을 개정하려는 일곱 가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NYPIRG는 이 중 다섯 가지 조치가 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시 정부 선거에서 독립선거운동 지출내용 공개를 강화하는 것, 공천 청원서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줄임으로써 시 정부 선출직 출마 후보자들의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 기존의 유권자지원위원회(VAC)를 선거재정위원회로 편입시켜 유권자 등록을 촉진하고 새롭게 개편되는 VAC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 모든 시 정부 공무원들에게 이해상충 교육을 받게하고 관련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높이는 것, 그리고 뉴욕시 시애피부지 표시 지도에 대중교통과 쓰레기 수거처리시설과 같은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나머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이거나 (시 기관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요건을 폐지하는 안을 권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가 형성하는 안. 이 권고안은 시 평의회와 시장실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게 시 정부 행정중재재판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 전체적으로 NYPIRG는 주민투표 2번 질문에 찬성표를 던지는 쪽을 지지하고 있다.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 회장, 전임 공원·레크리에이션 국 국장

2번 질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다. 이번 개혁법안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개혁으로 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출마 후보가 공천을 받는 데 필요한 청원서 서명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 개혁안은 선출직 경선의 경쟁을 높이고 따라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출마하기도 전에 개혁성향의 신인들을 쉽게 압살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해상충법을 강화하고 독립선거운동 지출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도 정치인들을 좀 더 청렴하게 만들고 외부 압력단체들의 영향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2번 질문이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하는데 미미한 변화만 가져올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중요한 변화임이 틀림없다. 천리 길을 갈 때도 언제나 첫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Scott M. Stringer, 맨하탄 보로장

본인은 이 안건의 채택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본인은 지금까지 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현장개정위원회에 요구해왔으며, 이번 변경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 참여 강화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엄격한 공천청원서 서명법 때문에 수많은 후보들이 출마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을 겪어야 했다. 공천청원서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줄인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후보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데 장벽을 없애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또 유권자지원위원회(VAC)를 선거재정위원회(CFB)에 흡수통합시키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등록을 권장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시 정부가 재정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한다.

2번 질문: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반대 입장

Alvin M. Berk

2번 질문에 반대표를 던지기를 호소한다. 독립선거자금 지출내용 공개는 자신의 선거자금을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 후보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해상충법 훈련의 의무화와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올리는 것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본다. 행정중재재판소를 OATH로 일원화하면 각기 전문성을 가진 행정중재재판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훗날 시장이 행정법판사들의 임명 및 보직 결정권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까지 있다. 시 기관들이 발행하는 보고서의 수를 줄이는 일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면 시장이 임원 대부분을 임명하게 돼 이후에 시 의회가 시장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의무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도 있다. 지도에 시 운영 공공시설을 표시하는 일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사안은 공해시설 입주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시청에서 마지막 공개 직전까지 시설물 위치를 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이에 따라 대중적 반대운동의 발생을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전체적으로 봐서 2번 주민투표안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갖고 있다.

James Brennan, 뉴욕주 하원의원 (브루클린)

지난 1월 여러 정부운영개혁단체는 뉴욕시장이 현장개정위원회를 조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떠한 위원회이든 “중요한 과업을 맡아서 실행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본인 또한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장개정위원회가 과연 시 정부를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스콧 스트린저 맨하탄 보로장은 이 문제를 2011년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시 현장개정위원회에 요청했었다. 또 뉴욕타임스 지도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것을 2012년 선거까지 연기할 것을 종용했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며 참여하기를 바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번 질문은 블룸버그 시장과 사업가 로널드 로더 간의 타협을 실현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됐다. 즉 로더가 블룸버그 시장의 3기 재선 운동을 후원하는 대가로 현장위원회를 통해 임기제한법을 재검토한다는 것이었다.

2번 질문은 실제로 일곱 가지 개별 문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들을 한꺼번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게 되어 있어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셈이 된다. 이 문항들 가운데 하나는 시 쓰레기 수거 문제 및 다른 사안들을 청취하는 판사들을 단일 기구 내에 배치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을 잃게 하고 직업 안정성까지 빼앗아서 주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Gale A. Brewer, 6 선거구 시 의회 의원

각 개별 문항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 가운데 일부는 시 현장개정위원회 심의 마지막 며칠 사이에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두 번째로 행정중재재판소의 통폐합 같은 사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주민투표가 각기 다른 7개 사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장을 개정하는 일은 오직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갖고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만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2번 질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다. 일곱 가지 법안 변경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의회에 입법과정을 통해 상정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하면 충분히 찬반론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 기회를 얻게 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다음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현장개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채택하여 충분한 공청회를 거친 다음 개별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Dan Jacoby, GrassrootsNYC 이사

1부 - 선거 :

1. 선거기간 자금을 지출한 독립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지출내용을 공개하게 하는 안: 이는 기업이나 다른 외부 단체의 독립지출을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던 미 연방 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례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찬성 한다.
2. 공천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지지자 서명 수를 줄이는 안: 서명자 수는 주 정부의 선거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이 법이 더 우선권을 갖는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3. 유권자지원위원회(VAC)를 선거재정위원회 산하로 편입시키는 안: VAC는 선거재정위원회가 아니라 선관위 소속이 되어야 한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2부 – 공직자 청렴

1. 이해상충법 위반 건당 법정 최고 벌금액을 현행 \$10,000에서 \$25,000로 상향 조정하는 안 :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이 될 수 있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2.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 취득한 “돈 토해내기” 법안: 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
3. 모든 시 정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이해상충법에 대해 교육받게 하는 안: 교육기간이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효율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교육받은 내용도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3부 – 정부 행정

1. 시장이 행정중재재판소를 재편하는 안: 시장이 행정중재재판소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2.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를 권고하는 위원회를 창설하는 안: 이것 또한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
3. 연례 발간하는 “시 시설물 필요 지도”에 일정한 주정부, 연방정부, 민간서비스 시설을 포함하는 안: 이런 사항들을 포함하면 시설물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된다. **GrassrootsNYC**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

요약

현장개정위원회는 이 모든 사안들을 한데 묶어서 유권자들이 개별적인 찬성·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GrassrootsNYC**는 총 9개 개별 사안들 가운데 4개 사안에 대해 찬성하고 5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박탈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GrassrootsNYC** 전체적으로 이 사안에 반대한다.